

<보도자료>

정권 비판 전단지 압수수색과 수사 등 ‘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3.17.(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전북경찰청 앞

<주최단체>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 노동자연대전북모임 녹색당전북창당준비위원회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평화주민사랑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김제,익산,전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평화바람, 민생연대, 새만금석탄재처리대책위, 전농전북도연맹군산농민회,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이상 35개 단체>

<기자회견문>

경찰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2일 오전 8시경,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 등 10여명이 박근혜 정권 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박성수씨의 군산시 주거지와 전단지를 인쇄했다고 여겨지는 군산 소재의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전단지,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인쇄내역과 주문내역을 압수했다. 우리는 이 같은 압수수색 집행이 심각한 인권침해며 이를 집행한 전북 경찰을 규탄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3년차에 들어서도 여전한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가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단지와 유인물을 인쇄하며 배포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찰은 지난 달 23일엔 부산, 12일엔 군산과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경 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엔 정권 비판 유인물이나 전단지가 배포될 경우에 임의동행 요구와 체포 등을 적시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권력의 부패를 막고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담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권과 대통령의 실정이나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수사며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는 한 지역,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후퇴시키는 심각한 행위다. 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이는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공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허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며, 특히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간인 헌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심실현의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다. 제21조에서는 표현에 있어 원칙적으로 허가·검열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적 인권과 비교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임을 인정하며,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나아가 국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언제나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며 문제제기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인 일이며 그렇기에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프랭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따르는 것이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했으며,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고 언급했다.

장애, 성, 인종 등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차별을 찬성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정권들부터 현재까지 공권력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을 해온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경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며, 즉각 정권 비판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압수수색과 수사를 반복할 경우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 3. 17.

경찰의 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VIP·정부 등을 비난·희화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 전단지 살포 유형

-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 살포하는 경우
- 노상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 건물·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경우(일명 그래피티)

□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지를 무단 살포한 경우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므로 현행범 체포 가능
 - ※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 행위에도 해당, 처벌가능
-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및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전단지·낙서의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질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
 - ※ 노면 등에 그래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등 무단배포’ 적용 가능(전단지·낙서 내용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
- 임의동행에 응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조사 또는 귀가조치 후 출석조사(전단지 회수), 인적사항 및 전단지는 수사부서 인계
- 임의동행에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광고물 등 무단배포, 벌금 5만원)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른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절할 경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주거불명인자로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인정 가능(92고합1824)

- 형소법 214조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 가능

- ※ 가급적 인적사항 확인 및 전단지 회수를 위한 임의동행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

<참고자료2> 정권 비판 전단지 탄압 상황 (정리: 박성수)

2014년 12월 서울에서 전단지 살포 -> 강력계 배당 공안사건화

2014년 12월 29일 - 박성수 전단지 살포->군산경찰서 실질적인 내사 종결

2015년 2월 9일 - 시민 60명이 공동으로 만든 실명 전단지 제작 배포함.

2월 16일 - 대구에서 변홍철 씨외 2명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전단지 배포함.

2월 23일 - 부산에서 경국지색 전단지 배포한 시민 자택 압수수색 함.

2월 말 - 경찰(대구)에서 변홍철, 박성수 씨 등에 대한 출석요구, 당사자들 거부

3월 12일 - 경찰, 대구와 군산에서 전단지 제작과 시민 압수수색.

군산의 경우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전단지를 차량에 꽃았다는 이유)의 죄목이 명시됨.



[2015년 3월 12일 오전 경찰들이 모여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과 만남.
“김정일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 고무찬양 의혹.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조항
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며 국보법 부정.

자기들이 하면 평화 활동, 남이 하면 종북 / 반국가행위

사법부는 평화콘서트를 연 황선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17년전(1998년) 일기장에
쓴 내용으로 올해 1월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럼 왜? 박근혜는 수사 않나?!
더군다나 서울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고 경찰서
강력계가 조사하고, 군산에서는 검경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70
년대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 간 것인가? 국민들을 짓밟으면 그냥 죽을 줄 아나!!!